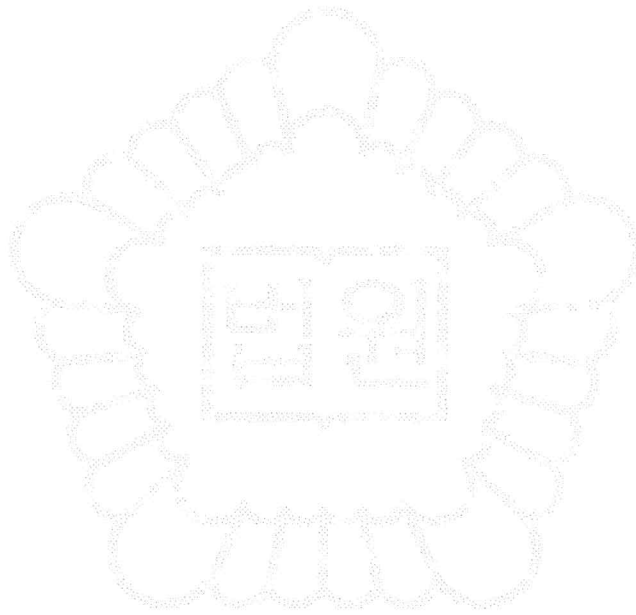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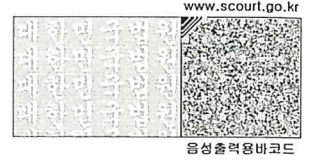


2014다72234

판 결 서



대 법 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다72234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환

피고, 상고인

1.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대표자 원장 백기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태언

2.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대표이사 장동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상현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3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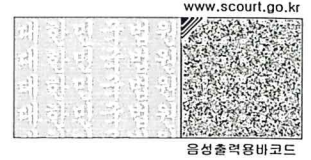
대표이사 권영수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552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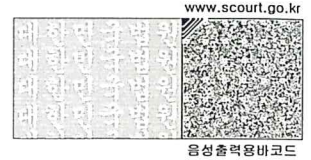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 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1.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사유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후단으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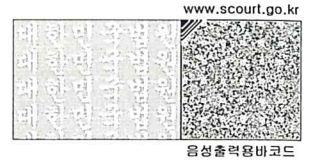
등 참조).

원심은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한 긴급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라 한다)가 원고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한 바 없고, 이 사건 긴급조치는 '구체적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처분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와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를 말하고,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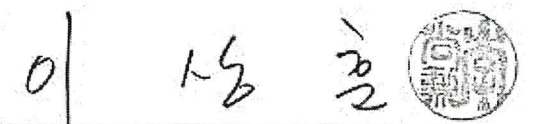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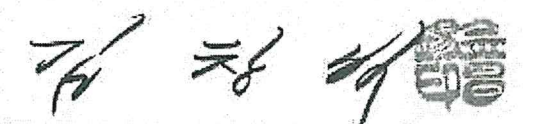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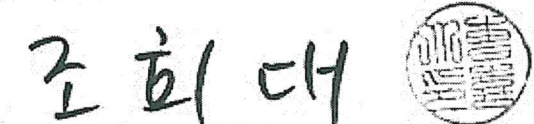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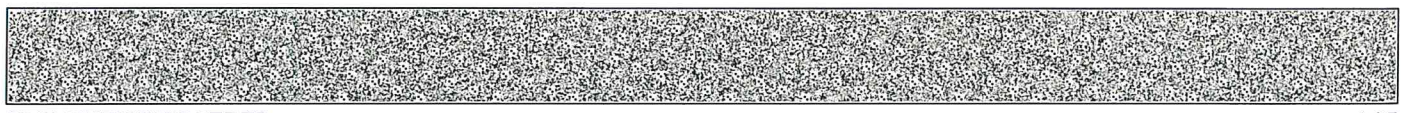
결국 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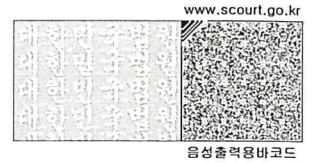
2.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단순히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
| 재판장 | 대법관 | 박상욱 |  |
| | 대법관 | 이상훈 |  |
| 주심 | 대법관 | 김창석 |  |
| | 대법관 | 조희대 |  |





정본입니다.

2017. 2. 21.

대법원

법원사무관 이영표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